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윤리강령과 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

제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5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 5) 대상자가 증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 3) 메타분석 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 4) 기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젠더의식) 연구결과 변수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분석 결과를 제시 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